

2004. 6. 23

2003년도 거창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 목 차 》

1. 검토경과	2
2. 결산의 개요	2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	3
가. 세입예산	3
나. 세출예산	3
다. 계속비 집행현황	4
라. 예비비 지출 현황	4
마. 기금내역 현황	4
바. 채권 현재액 계산서	5
4. 검토의견	6

(의안번호 제27호, 제28호)

2003년도 거창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 출 자 : 거창군수
- 나. 제 출 일 자 : 2004. 6. 7
- 다. 회 부 일 자 : 2004. 6. 12

## 2. 결산의 개요

### 가.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

### 나. 결산의 의의

한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일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써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예산 집행여부 규명과 동시 예산 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 적부를 심사하여 장래의 재정운용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

### 다. 결산의 절차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 가. 세입예산

- 1) 일반회계(생략)
- 2)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
계	19,553	21,607	17,635	3,972	355	3,616
상수도	5,629	5,601	5,590	11		11
주택사업	64	67	67	-		
농업인소득지원기금	3,390	3,541	3,428	113		113
농공단지조성사업	2,179	3,845	2,105	1,740	355	1,384
수질개선	7,291	7,295	5,387	1,908		1,908
주차장관리	1,000	1,258	1,058	200		200

#### 나.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계	280,026	209,803	165,134	106,223	8,669
	일반	260,473	198,733	157,180	100,105	3,188
	특별	19,553	11,070	7,954	6,118	5,481
농 정 과	계	18,106	12,596	11,993	2,267	3,846
	일반	14,716	12,554	11,951	2,267	498
	특별	3,390	42	42	0	3,348
경 제 과	계	9,955	5,755	5,618	2,814	1,523
	일반	6,776	3,948	3,816	2,809	151
	특별	3,179	1,807	1,802	5	1,372
환경녹지과	계	21,914	16,395	13,604	7,555	755
	일반	14,623	11,619	10,447	3,817	359
	특별	7,291	4,776	3,157	3,738	396
건 설 과	일반	191,898	148,997	116,236	74,306	1,356
지역개발과	계	23,632	14,390	8,032	14,928	672
	일반	23,568	14,337	7,979	14,928	661
	특별	64	53	53	0	11
농업기술센터	일반	2,155	1,786	1,786	270	99
상하수도 사업소	계	12,366	9,884	7,865	4,083	418
	일반	6,737	5,492	4,965	1,708	64
	특별	5,629	4,392	2,900	2,375	354

### 다. 계속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읍민생활공원	'03 ~ '05	7,000,000	2,000,000	0	2,000,000

### 라.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예비비 결정액	집행액	불용액
계		55,490	55,189	301
산림관리	2002수해피해보상금	16,760	16,760	0
농업소득관리	벼멸구 긴급방제	22,830	22,829	1
축수산관리	가금인플렌자 소독약 구입	15,900	15,600	300

### 마. 기금내역 현황

#### 1) 연도말 현재액

(단위:백만원)

구 분	적 립 액			사 용 액	연도말잔액
	계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498	411	87	10	488
재해대책기금	398	328	70	10	388
재난관리기금	100	83	17	-	100

#### 2) 사용내역 : 태풍피해복구비 사용

## 바. 채권·채무액 결산

### 1) 채권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 해 연 도 말 잔 액
합 계		4,234,673	355,221	2,212,279	2,377,615
특별회계	주택사업	258,273	10,276	53,368	215,181
	농업인소득	162,875	89,250	102,500	149,625
	농공단지	3,813,525	255,695	2,056,411	2,012,809

### 2) 채무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 해 연 도 말 잔 액
일반회계		320,151	10,000,000	35,750	10,284,401
소 계		6,381,652	0	1,145,771	5,235,880
특별회계	상 수 도	2,931,600	0	302,400	2,629,200
	주택사업	250,052	0	43,371	206,680
	농공단지	3,200,000	0	800,000	2,400,000

- 일반회계 채무발생액은 2002년도 태풍루사수해복비 5,000백만원과 2003년도 태풍매미수해복구비 5,000백만원임.

## 4. 검토의견

### 「공통사항」

-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연도말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예산이 적기적소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나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잔액은 102억 68백만원으로 집행잔액 과다하게 발생(전년대비 13% 증가)

2004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27억 5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결산추경편성 시 연도말 집행상황 분석을 철저히 하였으면 수해복구 관련 부족자금에 대하여 지방채발행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태풍매미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채 50억원을 발행(2003.12.23)함으로써 예산 낭비 초래

-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과,사업소의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1억88백만원으로 2002년도의 31억85백과 비슷한 수준을 시현하였으나 건설과는 전년의 6억 1,100만원보다 122% 증가한 13억 56백만원에 달하였음.

-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100건에 달하여 익년도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므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가급적 연초 발주토록 하여 익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농정6, 경제6, 환경녹지7, 건설48, 지역개발20, 농업기술6, 상하수도7)

※ 2003년도 명시이월 승인한 예산액과 결산서류상 명시이월액 차액 발생

구 분	이월승인액	결산서 표기액	차 액	비 고
일반회계	87,110,259	86,512,594	597,665	16건

- 자치지원1, 상하수도3, 지역개발1, 지역경제1, 환경녹지4, 건설과6건 변경

## 「농정과 소관」

- 돈육브랜드 판매점 설치를 위한 임차료 50,000천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명시이월한 사유와 현재까지 판매점 설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결산서류 96)
- 축사료시범포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1억원) 예산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토지매입비는 시설비에 계상하는 것이 적정하나 자산및물품취득비 과목에 편성한 것은 예산과목에 배치되는 것임. 동 예산은 명시이월 승인(결산서류 p96)
- 농업인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의 체납액이 112,875천원에 달하고 있어 향후 효율적인 기금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부속서류 p25)
- 서울잠원동농산물직판장은 위치선정 부적정 등으로 사업성이 없어 철거함에 따라 보조사업비 50,000천원을 회수(2003.12.17) 하였으면 이를 세입조치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나 투자가능한 새로운 단체를 선정 직판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일시예탁)에 예치(부속서류 p25)

## 「경제과 소관」

-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비 40,000천원은 당초 용역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예산승인하였으나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직접투자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으로 예산의 효과성을 도모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결산서 p107~108)
  -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서중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 402-01에 표기한 1,600,000원은 1,600,000,000원으로 표기 착오(결산서 p127)



-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수납률이 전년도 62%보다 낮은 55%에 이르러 미수납으로 인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1,384,140천원으로 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무재산자와 고질채납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추적으로 강제징수등의 방안마련이 필요하며, 결손처분한 355,396천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부속서류 p15, p25)
-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액은 전년대비 172%증가한 것으로 주정차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나 과태료 징수율이 44.6%에 그쳐 체납액이 최근 8년간 누적수준인 217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결산서 부속서류 p29)

### 「환경녹지과 소관」

- 지역생태계용역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40,000천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이를 연내 집행하지 아니하고 명시이월한 사유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결산서류 p73)

### 「건설과 소관」

- 거창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한 자료에 의하면 검사대상 14개소중 6개소가 위험하여 재가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재난관리예방을 위하여 운용중인 재난관리기금(100,379천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필요(결산서류 p245)

### 「지역개발과」

-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예산 452,384천원중 집행액 및 이월예산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285,70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책정된 예산에 대하여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용액이 과다발생(결산서류 p84)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체납자중 고질적 체납액이 7,797천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나 고질적 체납자를 방치할 경우 체납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부속서류 p25)